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390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390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5136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고,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박경준, 이가람, 최혜수

변론 종결 2022. 6. 23.

판결 선고 2022. 7.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5136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60,348,478원, 원고 B에게 37,843,155원, 피고 D는 원고 A에게 99,447,259원, 원고 B에게 62,361,1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0째 줄부터 1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19. 2. 18. 이전에 이 사건 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 및 E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인 2017. 7. 21.경 E이 도주하리라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그 설정계약으로 E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측이 2014년경 E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E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영수익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2017. 6.경 E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 D 측이 2011년경부터 2017. 8.까지 E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상황 및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① 피고 C 측이 2014년 및 2015년에 E에게 자금 투자를 한 것은 물론 피고 C는 2014. 8. 5.부터 E의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피고 D 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년간 E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들 측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E에게 금전 대여 또는 투자를 하였는데 수년간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다가 E이 도주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설정계약의 체결 전까지는 E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③ E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7. 10.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한 달여 후부터는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④ 설령 피고들이 E의 도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채동수

판사송영승

별지